

제141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면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면
2.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일반회계)(종로구청장 제출) 9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일반회계) 검토보고서 15면
3.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특별회계)(종로구청장 제출) 21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조례안(특별회계) 검토보고서 25면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3
----------	------

제출년월일 : 2004. 5.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 및 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문화재에 대한 구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인사동 문화지구내 문화권장시설 등에 대해서도 구세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함

(안 제7조)

- 나. 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안 제7조의3)

- 인사동문화지구안에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1923(2003.10.16)호
- 2) 서울시 세제 13430-1218(2003.10.17)호

나. 예산조치 : 비예산사업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생략)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u>주거용 부동산</u>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u>주거용 건축물</u>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u>주거용 부동산</u> 3. (생략) 제7조의2 (생략) <u><신설></u>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 -----<u>부동산</u> 2. -----<u>건축물</u>----- ----- ----- -----<u>부동산</u>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2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인사동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